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6. 9. 7.(수) 09: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지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확인하고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에 다음 회의에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의결사항

가. (주)LG유플러스 및 유통점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6-51-191 ~ 196)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주)LG유플러스 및 유통점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단말기유통법의 제4조제5항 및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조치(안)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관계자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사실관계와 위법성에 대해서 먼저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계자 의견진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정조치(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제안이유는 LGU+ 및 관련 유통점이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법인영업을 하면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배경은 금년 초부터 법인영업에서 일부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과도한 장려금이 불법 지원금으로 전환되는 등 시장과열 양상이 빈번하게 나타남에 따라 1차로 이동통신 3사에 대하여, 그리고 2차로 KT와 LGU+ 2사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2차 실태점검 도중에 LGU+ 및 관련 유통점의 법인영업 부문에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현저하여 금년 6월 1일부터 사실조사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실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LGU+ 법인영업에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 가입건수 17만 1,605건 중 민원제보, 모니터링 결과 등

을 토대로 59개 유통점의 4,290건을 대상으로 해서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6개 유통점에서 3,716명의 가입자에게 평균적으로 19만 2,000여원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LGU+는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문 판매, 소형특판, 인프라 구축, 콘테스트 등의 장려금 명목으로 차별적인 장려금 정책을 대리점에 내려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매월경 가능성이 높은 방문판매, 소형특판 장려금 등의 정책을 통해 개통된 가입자는 53,516명이고, 그 중에서 45,592명은 기업사원증 구비절차 없이 개통되어 LGU+의 소매월경 판매 관리에 대한 주의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LGU+는 이러한 소매판매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 기업체 직원 및 일반 이용자의 유동이 많은 빌딩을 중심으로 라운지형, 가판형, 매장형 등의 상시 판매 거점을 확대하는 정책을 운영하면서 구축비, 인건비, 임대료 등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법인영업 대리점은 고액장려금과 함께 다량특판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제한된 기업 내 영업만을 시행하도록 금년 초부터 행정지도를 해 왔습니다만 LGU+는 26개 법인영업 대리점에서 일반 도·소매 겸업코드를 보유하고 일반 소매 월경판매를 공공연하게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계속 용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3개 유통점에서 사전승낙을 받지 않아 사전승낙서를 미게시하고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1개 판매점에서 이번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PC 및 가입서류에 대한 조사 접근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법성 판단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LGU+ 관련 56개 유통점이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고, LGU+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LGU+가 차별적으로 고액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소매판매를 확대하도록 독려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법인과 일반소매 겸업판매를 용인하는 등 지원금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되도록 유도한 행위는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3개 판매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아 사전승낙서를 미게시하고 영업을 한 행위는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고 1개 판매점이 조사를 거부·방해한 행위는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사한 사실관계와 위법성 판단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소매월경 가능성이 높은 방문판매, 소형특판, 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 문현석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다단계판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다단계판매에 포함되는 한 유형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 문현석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단계판매 자체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다단계판매보다 방문판매 개념이 더 넓은 것입니까?

○ 문현석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가 많이 차지하는 것입니까?

○ 문현석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그것은 조사관이….

○ 김재홍 부위원장

- 방문판매 내용이 다단계를 주로 지칭한 것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직접 조사하신….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임서우 사무관

- 방문판매가 훨씬 비중이 높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다단계와 다른 것입니까?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임서우 사무관

- 다단계는 방문판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방문판매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다단계 조직에 의한 다단계판매 말고 그냥 방문해서 개별….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임서우 사무관

- 개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용어를 방문판매라는 용어를 써서 헷갈리니까 방문판매의 경우에는 다단계판매보다는 개별

방문판매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임서우 사무관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다단계판매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도 그랬는데 다단계는 조직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방문판매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인데 단통법상 규정되어 있는 지원금 공시제와 사전승낙제와 이런 것들을 휴대하고 가서 보여주는 것입니까?

○ 문현석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예, 직접 소지를 하고 게시하고 있고, 저희가 알기로는 패드를 지급해서 그것을 통해서 가입자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이 다단계판매의 문제점과 똑같은 것입니다. 단통법에 규정된 지원금 공시제와 사전승낙 게시를 법대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편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정된 장소 여러 사람이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개적으로 게시, 공시하는 것이지 품에 넣고 가서 개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단계판매와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사실조사와 상관없이 방문판매라는 것이..., 법인영업과 개인을 상대로 하는 영업은 영업활동 패턴 자체가 다른 것 아닙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개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것은 대부분 유통점이나 대리점에 개인이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인영업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개인 한 두 사람을 상대로 영업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나 단체나 기관 등 다수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이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불법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모든 통신서비스인 경우에 법인영업이라는 것은 방문판매가 주된 패턴 아닙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영업방식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방문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아는 것과 다르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사전 보고받을 때도 제가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이해가 확실히 안 됐습니다. 소매월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법인영업 쪽 지원금이 개인영업으로 이전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월경이라는 의미가 와 닿지 않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장려금 과다지급이나 본사 영업정책이 물론 B2B를 관장하는 BS본부와 대리점으로 쪽 내려가지만 실제로 이러한 영업정책이나 장려금 과다지원은 기본적으로 개인영업에 대해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장려금 과다지원과 영업정책이 내려간 것입니다. 저는 계속 이해 안 되는 것이 B2B 영업을 전담하고 있는 BS본부가 B2C 시장에서 이렇게 불법행위를 했다, 이 규정이 딱 맞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월경입니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소매월경은 소위 말해서 시중에서 쓰는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기본적으로 법인영업과 일반 개인영업으로 구별되는데 오랫동안 무선만이 아니라 유선까지 포함해서 이용약관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B2B 법인영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다량 가입자에게 싸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면서 하는 영업방식을 암묵적으로 서로 용인하면서 해 왔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다량 특판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법질서를 흐트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지키자는 부분이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아마 금년 상반기에 들어와서 그러한 물량이 일부 일반 개인 가입자에게 넘어가면서...

○ 고삼석 상임위원

- 정확히 물량이라기보다는 돈이 넘어간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법인을 상대로 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반 개인 가입자에게 넘어가면서 시장 혼란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개념을 정확히 써야 합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이런 용어를 쓸 수 있고 시장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확하게 법의 잣대를 적용해서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위법이 발생했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지하고 개선시킬 것이냐? 이것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매월경은 우리가 심의 제재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용어로 적정한 것이냐? 명확한 것은 B2B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LGU+의 BS본부 주도로 B2C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여기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하나 의견을 여쭙 보겠습니다. 다른 이통사들과 달리 LGU+에만 있는 특이한 조직이 바로 법인영업을 담당하는 BS본부와 개인을 담당하는 PS본부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이통사는 없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것은 이통사별로 각자 내부 사정에 따라 결국 서비스별로 조직을 이루는 데가 있고 결국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LGU+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B2B 영업 중에 이통도 같이 넣어서 판매하는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물론 조금 있다가 시정명령할 때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안건에 보면 ‘이러한 영업조직이 다른 이통사와 달리 일반 PS와 법인BS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시장 혼탁의 주요 요인 및 향후 책임소재 명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쭙 보는 것은 이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LGU+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한 것인지, 아니면 규제 회피 목적으로 타 이통사들과 다른 조직을 운영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과정에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조사관님이 살펴보셨을 것이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것보다는 일단 회사 자체적인 판단 하에서 어떠한 영업방식이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서 그 조직을 운영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조사관계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임서우 사무관

- 회사의 자율 판단에 의해서 마케팅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경쟁 차원에서 보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시장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곤란을 겪으므로 불편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를 들어 타 경쟁사인 경우에는 서비스별로 하되 서비스 내에서 법인영업과 일반 개인영업을 나누어서 하는 형태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회사의 판단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하나만 더 물어보면 지금 법인영업을 하는 대리점, B2B 코드를 받는 대리점에 대해서 LGU+에서는 개인영업을 할 수 있는 B2C 코드까지 같이 주기 때문에 시장용어로 보면 소매월경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남아 있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우리가 금지를 시키고 나중에 조사해서 제재하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BS본부 따로, PS본부 따로 이렇게 운영됐느냐, 이것이 명확하냐는 것이지요. 아니면 내부적인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소매월경이 이루어진 것인지가 저는 관심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회사 내에서는 아마 별도로 운영해 온 것으로...

○ 고삼석 상임위원

- 확신하십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해 보면 이동통신 3사 모두 법인영업과 개인영업을 구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인영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판매량이 많고 거기에서 수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대리점이나 판매점에게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장려금도 개인 판매보다는 더 많은 액수를 주고 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동통신 3사가 다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유독 LGU+는 BS본부와 PS본부를 나누어서 법인영업용의 물건을 BS본부에 공급하고, PS본부에는 개인영업용 물건을 공급하는데, 두 본부가 서로 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경쟁체제 비슷하게 물건을 더 많이 판매해서 실적을 더 내고자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법인영업용으로 나온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장려금 수준도 높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법인뿐만 아니고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 소매 일반 개인에게 파는 것으로 돌렸고, 개인판매로 돌렸다는 의미에서 월경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개인판매를 함에 있어서는 다른 정상적으로 개인판매용으로 나온 것보다는 장려금과 혜택이 더 많으니까, 그 많은 혜택을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소비자에게 불법지원금 형식으로 더 얹어줘서 문제가 된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안건 5페이지에 보면 '16년 1월부터 6월 기간 중에 소매월경 가능성이 높은 방문판매, 이 방문판매가 법인방문을 뜻하는 방문판매입니까, 아니면 대리점,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 밖에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판매하는 다단계판매를 포함한 개념의 개별판매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앞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단계와는 구분되는 방문판매이되, 법인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개인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영업 전체적으로 보면 17만여명 중에 5만3천여명이 개인방문 영업으로...

○ 김재홍 부위원장

- '소매월경 가능성이 높은'이라는 표현은, 법인에 방문해서 판매해도 거기에서 소매월경을 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아닙니다. 아무래도 방문판매를 하다 보면 명확하게 구별해야 하는데 사실은 구별이 시장 현실에서는 어렵다는 의미에서 결국 방문판매를 하다 보면 법인만을 하기보다는 또 자연스럽게 일반 개인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여기에서 표현한 '소매월경 가능성이 높은 방문판매'는 법인에 방문해서 판매하면서 소매월경을 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아닙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판매하는 것을 뜻하는 방문판매 아닙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구별하는 것이….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니까 개념을 분명하게 써야 하는데 법인을 방문해서 판매하는 것 말고 소매월경 금지행위가 이루어진 개별 접촉, 개별 방문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야지요. 법인 폰은 기본적으로 대리점이나 판매점 또는 본사가 단체판매를 하니까, 수익이 높으니까, 서비스를 더 해 주기 위해서 가서 판매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별판매가 문제지요.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하지 않고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 같은 것도 그중 하나이고, 다단계 조직에 들어가지 않은 개별 행사 같은 개인판매원도 밖에서 이렇게 방문판매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통법에도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단계판매와 똑같은 편법적인 판매유형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쓴 소매월경 가능성이 높은 방문판매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아래쪽에 보시면 법인이든 개인을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방문판매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입자가 총 17만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법인을 뺀 나머지 실제 소매월경이 이루어진 가입자가 53,000여명이라는 의미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것은 저희가 다루고 있는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개인에게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것을 저희가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9월 1일부터 신분증 스캐너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효과가 상당히 나타나리라고 기대하고 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아울러서 그와는 별개로 지난 8월에도 1차로 다단계판매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태점검을

진행 중에 있고, 또 9월에도 2차로 연장해서 실태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실태점검 결과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아마도 법인영업을 해야 하는데 개인을 상대로 법인영업 연장선상에서 소매월경이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보니까 59개 유통점이 대상인데 일반 도소매 겸업코드를 보유한 것이 약 26개 법인 영업점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59개 유통점이 전부 법인영업 대리점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조사 대상의 절반 가까이가 일반 도소매 겸업코드를 보유하고 있음이 적발된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일반 도소매 겸업코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탈법이지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 자체를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차별적으로 과다지원금을 지원했느냐, 또는 차별적 유도를 했느냐를 보는 것이지 실제 코드 자체를 보유한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법인영업이나 개인영업을 수시로 왔다 갔다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배경이 도소매 겸업코드를 보유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하나의 원인은 된다고 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이런 도소매 겸업코드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명확하게 경계선을 구분 지어서 넘어갈 때는 반드시 뭐라고 할까, 단속을 피할 수 없게끔 영업해야 하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아마 일반 유통점의 조사 대상 약 절반 가까이가 코드를 공유하면서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런 실태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까? 일반화되어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상반기에 실태점검 과정에서도 다른 이통사들 일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LGU+와는 차이가 워낙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니까 법인영업을 하는 대리점은 법인영업만 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이런 코드를 공유하다 보니까 몰래 은밀하게 또 개별영업으로, 개인영업으로 넘어간 셈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코드를 공유할 경우 반드시 그런 경계선을 지키도록 하는 행정지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래서 일단 시정조치(안)에도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업무처리절차를 다 개선하도록...

○ 김석진 상임위원

- 이것이 타 이동통신사업자에게도 이런 식의 탈법영업이 은밀하게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营业을 하면 단속을 강화해서 과징금을 내게 된다는 신호를 우리가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검업코드를 보유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서 영업 경계를 분명히 하도록 행정지도가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하면 올해 초부터 법인영업에 사용될 휴대전화단말기가 개인영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2016년 2월 15일부터 쪽 조사를 시작해 왔던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2개의 이동통신사는 법인영업으로 공급된 이동통신단말기가 개인영업으로 전혀 안 넘어간 것은 아닌데 넘어가는 비율이 별로 많지가 않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법인영업 코드와 개인영업 코드를 같이 갖고 있는 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극히 적었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2차 조사결과에 의하면 LGU+의 경우에는 다른 2개 이동통신사에 비해서 법인영업에서 개인영업으로 전환되어서 판매되는 양이 너무 많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영업 코드를 가진 대리점, 판매점들이 개인영업코드까지 갖고 있는 것이 다른 이동통신사에 비해서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위법행위가 벌어지면 다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과거에 천명했고 과거에도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이동통신 3사의 위법행위를 봤을 때 다 위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중에 어느 한 사업자가 굉장히 과도하게 위법행위를 하고 있을 때 단독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저희가 두 차례 실태점검을 해 본 결과, LGU+가 다른 데에 비해서 법인영업에서 개인영업으로 넘어가는 단말기가 과도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불법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많다, 그래서 단독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나중에 시정조치(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되겠습니까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조직을 개선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아직 선뜻 이해가 안 돼서..., 4페이지입니다.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인데 차별적 장려금 정책을 대리점에 내려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가 본사도 조사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본사에서 확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리점들을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까?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임서우 사무관

- 본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본사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러면 이 차별적 장려금 정책을 수립하고 내려 보낸 행위의 주체가 BS본부라는 것이지요?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임서우 사무관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그것이 BS본부와 PS본부와 협의했는지, 내지는 그 위에 있는 CEO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지 이것은 확인 안 했습니까?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임서우 사무관

- 저희들이 PC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봤지만 그 여부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희가 조사하고 판단한 바에 따르면 BS본부가 독자적으로 차별적 장려금 정책을 수립하고 내려보냈다?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임서우 사무관

- 저희는 그렇게 한 것으로 자료 확인 결과,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과다지원금 지급,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등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매판매 강화 지원, 그리고 일반소매 점업코드 용인, 판매점 사전승낙제 위반, 조사 거부·방해 이렇게 큰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법성 판단에는 지원금 과다지급,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사전승낙제 위반, 조사 거부·방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위반사항이라고 하는 것과 위법성 판단의 큰 제목과 매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사무처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가 단말기유통법에 명시적으로 위반이고, 뭐가 위반될 소지가 있는 영업행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소매판매 강화 지원이라든가 일반소매 점업코드 용인이라든가, 이것이 단말기유통법 위반사항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아닙니다. 그 자체는 아니고 앞부분에 있는 것...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려금을 과다하게 지원한다든가 소매판매 지원을 본사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라든가 점업코드를 용인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과도한 지원금 내지는 차별적인 지원금 제공을 유도하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니까 제가 어느 사업자 간에 어디가 옳다, 그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방통위는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사항과 시장에서 위반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영업행태를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정명령을 내리려면 이용약관이나 업무처리 절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명령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또

무슨 과징금이다 기타 다른 제재를 할 때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반사항'이라 해 놓고 제목을 그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마치 실제로 실정법에 위반되는 행위와 행태적으로 영업행태상 바람직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런 것조차도 전부 실정법상 위법행위인 것처럼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논리적으로 앞에 위반사항이라고 정리된 것과 위법성 판단의 폭지가 매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정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심의·의결서를 작성할 때도 그것이 고려가 되어야 하고, 이 안건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이 기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소매판매 강화 지원, 그다음에 일반소매 겸업코드 용인, 이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과다지원금 지급과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에 어찌 보면 원인이 되는 행위로 그 서브로 들어가서 설명되어야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배치를 제대로 해서 대외적으로 자료를 내고, 심의·의결서도 그와 같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더 질문할 것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논의할 것이 없으시면 LGU+ 관계자 의견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LG유플러스 의견진술인 입장)

참석자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BS본부 사업부문장 나오셨습니까?

○ 이은재 ㉸LG유플러스 BS본부 사업부문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김규태 CRO 공정경쟁담당 상무보 나오셨습니까?

○ 김규태 ㈜LG유플러스 CRO 공정경쟁담당(상무보)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PS본부의 최승호 기업영업담당 상무보 나오셨습니까?

○ 최승호 ㈜LG유플러스 PS본부 기업영업담당(상무보)

- 예.

○ 최성준 위원장

- LGU+가 조사받고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은재 ㈜LG유플러스 BS본부 사업부문장

- LGU+의 법인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재입니다. 우선 이번 시정조치(안)와 관련해서 사실조사 대상기간 중에 법인영업 분야에서 법 위반사항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당사에 대한 제재처분을 결정하실 때 저희가 생각하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고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당사를 법인영업의 월경으로 인해서 유통망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월경 행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자체 개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태점검 기간인 지난 5월 말에 위원회로부터 당사의 법인영업 월경건수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즉시 조치 가능한 방안과 준비기간을 거쳐야만 시행 가능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월경의 가능성이 높은 영업 채널에 대해서 강도 높은 관리를 시행했고 결과적으로 법인영업 가입자가 6월에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법인영업 조직과 개인영업 조직을 '16년 7월 1일자로 통합하여 월경 가능성이 높은 소형특판 채널 영업을 개인영업으로 이관하고 개인영업 정책과 동일하게 운영하게 함으로써 월경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연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평가하는 당사에서 연중의 조직변경은 특히 이례적인 사항으로 6년간 PS와 BS로 분리되어 운영해 온 조직을 통합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위반사항으로 판단하신 당사의 법인영업 월경을 통한 추가 지원금 지급행위는 그 규모가 작아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실조사를 통해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1월에서 6월까지 월경규모는 53,500여명 수준으로 당사 전체 가입자인 240만명 중 2%에 해당하고 전체 통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 수준입니다. 기존에 위원회에서 긴급하게 또는 단독으로 사실조사를 하신 것은 대란 등의 시장혼란이 발생하거나 특정 사업자의 MNP 변동이 현저하게 사회 이슈화되었을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대란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고 당사의 MNP에 큰 변동이 있던 것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조사 대상기간 동안 번호이동 시장은 일평균 건수가 14,500여건으로 시장과열 판단 기준인 24,000건을 초과한 적이 없이 안정되게 운영되었고, 당사의 법인영업 월경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매월 정책서 등을 통해서 유통점에 대해서 엄격한 법 준수를 강조하고 위반 대리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사실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본사는 물론 전 대리점에서 현장조사에 성실하게 응한 점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위반행위의 규모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과거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실조사 결과와 비교해서 미미한 수준이고, 또 위원회의견을 반영하여 사실조사 기간 중에 조직개편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당사의 자진 시정노력 또한 이루어졌음을 고려하셔서 최소한의 제재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두 분은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최승호 ㈜LG유플러스 PS본부 기업영업담당(상무보)

- 없습니다.

○ 김규태 ㈜LG유플러스 CRO 공정경쟁담당(상무보)

-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 부문장님의 진술을 들어보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또 규모도 전체 시장에서는 1%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들을 꼭 하셨습니다. 물론 수치상으로는 말씀이 성립되겠습니다만 저는 LGU+의 이번 사안을 대하는 자세나 입장이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장규모 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일단 위법행위를 본사에서 묵인 내지는 눈감아 준 부분도 있고, 또는 어떤 조사에 의하면 방조를 넘어서서 직접 지시한 흔적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한 자성과 앞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규모가 작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은재 ㈜LG유플러스 BS본부 사업부문장

- 사실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희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그동안 6년간 해 온 조직도 다시 바뀌어서 아예 근본적인 원천을 없애자, PS와 BS 코드를 2개를 나누는 형태도 지금 현재는 없어지고 있고 관리감독도 훨씬 강화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저희의 자정노력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진술에 비중 있게 포함이 됐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벌을 얼마나 어떤 식으로 받느냐 이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데 대한 재발방지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

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설명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다른 두 분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갖는 입장이라든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시정조치를 할 것인지, 지금 조치가 없다면 각오라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 최승호 ㈜LG유플러스 PS본부 기업영업담당(상무보)

- 보고서에 나왔듯이 저희가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시정조치와 관련된 재발방지 부분에 대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발생한 가장 핵심 원인 중의 하나가 본부별로 모바일을 하는 조직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 본부 간에는 완전히 다른 독립채산제 방식이다 보니 단통법이라는 모바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BS본부는 법인 대상 영업을 하지만 주로 유선상품 중심으로 하는 데입니다. 모바일 단통법에 대한 이해관계가 법인 대리점이 약했고 그러면서 회사는 이번 7월 1일자로 BS에 소속되어 있는 모바일 조직을 개인영업본부로 합류시키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 김규태 ㈜LG유플러스 CRO 공정경쟁담당(상무보)

- 한마디만 첨언을 드리면 아까 시정조치(안)에도 나와 있는데 겸업코드가 26개가 있는 것 아니냐? 저희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사업 본부별로 대리점 계약을 맺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별개 회사처럼 별도 대리점 계약을 맺다 보니 겸업코드를 의도적으로 저희가 만들지는 않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보니까 사실 그 겸업코드라는 것이 꼭 동일인도 아닙니다. 가족 친지인 경우도 있고 어쨌거나 동일한 사업체로 판단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를 저희가 판단하다 보니 한 사업본부에서 관리해야 이렇게 불법이 발생할 원인을 제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연중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좋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가 없도록 임원들께서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조사 초기에 이틀간 현장조사 접근을 막고 방해한 행위입니다. 또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그 부분에 대한 사과가 당연히 오늘 진술에 들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혀 빼버리고 정부의 법 집행을 또 조사 자체를 진입조차 막는 몸싸움 비슷하게 이루어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를 대표해서 나오셨다면 당연히 이런 공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보십시오.

○ 김규태 ㈜LG유플러스 CRO 공정경쟁담당(상무보)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의를 일으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해를 할 의도도 없었고 물리적인 어떤 거부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떤 생각에서 기인했느냐 하면 방통위에서 저희에게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래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CEO 지시 하에 개선활동을 해 오던 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 개편 계획까지도 말씀드리고 자발적인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전체 시장에 미치는 부분도 조금 미미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지만 정부에서 이야기하시고 이것이 전체 안정된 시장에서 어떤 부정적인 여파가 발생하겠다는 판단 하에 스스로 시정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꼭 단독조사가 필요한 것이었나 이렇게 이유를 확인하고자 했던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물의를 일으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차후에 이런 조사가 이루어질 때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LGU+가 왜 단독조사 대상이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지금 지적받은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랬을까라고 해서 저희 조사관들이 나갔을 때 왜 LGU+가 조사대상이 되었는지를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관들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지요? 이러이러한 실태점검을 했는데 이렇게 건수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이 전혀 줄지를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는 것을 설명했지요?

○ 김규태 (원)LG유플러스 CRO 공정경쟁담당(상무보)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 설명을 했으면 그 설명 이상의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6월 1일로 기억되는데 그날 조사 나갔을 때 그 설명 듣기까지 저녁 5시, 6시까지 설명을 요구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설명이 있었을 때에는 조사에 응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봅니다. 아마 김석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날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 날 그것을 전달 이야기했던 것을 문서로 작성해서 제시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조사에 응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앞으로도 조사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LGU+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BS본부가 PS로 조직을 넘기기 전에 BS에서 관리했던 가입자가 전체 몇 명입니까?

○ 최승호 (주)LG유플러스 PS본부 기업영업담당(상무보)

- 누적 가입자가 군 수신폰을 제외하고는 75만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75만이고, 그러면 LGU+ 전체 가입자의 몇 % 정도 되지요?

○ 최승호 (주)LG유플러스 PS본부 기업영업담당(상무보)

- LGU+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 정도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물론 예산 배정과 운영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겠지요. 나중에 그것이 당연히 성과 평가와 직결이 되니까요. 예산이라는 것이 LGU+ 전체 예산에서 본부별로, 조직별로 배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최승호 (주)LG유플러스 PS본부 기업영업담당(상무보)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예산배정은 목표치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연초에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의사 결정을 거쳐서 확정합니까? 부서간의 협의는 당연히 할 것이고요.

○ 최승호 (주)LG유플러스 PS본부 기업영업담당(상무보)

- 월 단위...

○ 고삼석 상임위원

- 아니, 연간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정하시지요?

○ 최승호 (주)LG유플러스 PS본부 기업영업담당(상무보)

- 연간 예산...

○ 고삼석 상임위원

- 독립채산제라고 했으니까 전체 LGU+에서...

○ 최승호 (주)LG유플러스 PS본부 기업영업담당(상무보)

- 본부가 가져가야 할...

○ 고삼석 상임위원

- 본부가 CEO께 개별적으로 보고해서 받으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최승호 (주)LG유플러스 PS본부 기업영업담당(상무보)

- 경영지원 쪽과 기획 쪽과 협의해서 본부의 매출과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 거기에 합당한 예산 비용 설정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큰 틀에서 회사의 영업정책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합니까?

○ 최승호 ㈜LG유플러스 PS본부 기업영업담당(상무보)

- 모바일 쪽만 보면 모바일 쪽의 큰 틀은 법인영업 부분의 비중이 작다 보니 개인영업본부, PS본부에서 전체 가입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상된 비용들 이렇게 책정되고 있고 저희는 BS본부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한 10%로 유선 쪽이 많다 보니...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조직개편 전·후로 조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법인영업을 담당하는 BS 부분은 BS사업 부문에 기업모바일사업 담당에 기업모바일정책팀이 있습니다.

○ 최승호 ㈜LG유플러스 PS본부 기업영업담당(상무보)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팀 단위입니다.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이 단위에서 BS 전체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지금 PS본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보면 PS정책관리본부가 있고, 영업정책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영업정책팀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업 모바일 쪽까지 포함해서 큰 틀에서의 정책은 당연히 PS본부에서 나오고 일부를 BS본부 여기에서 집행하겠지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최승호 ㈜LG유플러스 PS본부 기업영업담당(상무보)

- 아닙니다. BS본부의 모바일영업정책팀이나 여기에서 다 하느라고 생각하는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워낙 BS본부 내에서 비중이 작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유선 중심의 고객사 영업을 할 때 모바일도 업세일(Up sale)식으로 또는 크로스세일(Cross sale)식으로 같이 시도해 보라는 관점에서 시행되다 보니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모바일 전체 속에서 너희가 한 것 아니냐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더 확인을 못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을 해 오면 가입자의 특성을 파악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이 법인영업을 통해서 받아온 것인데 실제로 나중에 가입자들 내역을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법인영업 B2B 영업코드를 받은 대리점에서 올렸다 할지라도 이것이 실제로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가입자인 것인지, 아니면 개인영업을 통해서 확보한 가입자인 것인지 이것이

본사 차원에서는 파악이 안 됩니까?

○ 최승호 (주)LG유플러스 PS본부 기업영업담당(상무보)

- 추론을...

○ 고삼석 상임위원

- 이야기해 주십시오.

○ 최승호 (주)LG유플러스 PS본부 기업영업담당(상무보)

- 제가 기업모바일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진정 B2B가 아니고 약간 B2C적인 성격의 부분이 30%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고, 그것을 오래 이 업무를 맡으면서 시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했느냐 하면 회사 관점에서는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법인 쪽은 법인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려금이라는 것이 개인영업본부보다는 많은데 작은 장려금으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데 개인영업본부에서 이 부분을 법인영업을 하라는 조직의 대리점이 들어갈 때 이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낭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 개선하고 없애려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정책적 장치를 했지만, 정말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일부 새어 나간 것을 막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소매월경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상무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을 보니까 알고 계시네요.

○ 최승호 (주)LG유플러스 PS본부 기업영업담당(상무보)

- 주기적으로...

○ 김규태 (주)LG유플러스 CRO 공정경쟁담당(상무보)

- 그러니까 관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은 법인영업도 PS본부로 다 넘어왔고 그다음에 PS본부에, 아마 최승호 상무보께서 지금 PS본부에서 기업영업담당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최승호 (주)LG유플러스 PS본부 기업영업담당(상무보)

- 예.

○ 최성준 위원장

- 소위 법인영업코드와 개인영업코드를 같이 갖고 있는 대리점이 있었다, 거기서 소위 BS본부는 BS본부대로 영업코드를 쫓고, PS본부는 PS본부대로 영업코드를 쫓는데 서로 잘 몰랐다고 하니깐 몰랐다고 합시다. 모른 상태에서 쫓아서 영업을 혼재가 됐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여전히 법인영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승호 (주)LG유플러스 PS본부 기업영업담당(상무보)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그것을 한 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판매점이나 대리점 중에서 이렇게 법인영업과 개인영업을 겸업코드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혼재해서 하는 것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대리점은 법인영업만 하도록 하고 이 대리점은 개인영업만 하도록 하고 이것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것이 관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 최승호 (주)LG유플러스 PS본부 기업영업담당(상무보)

- 현재는 같은 본부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B2C의 성향과 법인이 운영할 필요가 없었던 대리점들 또는 중복된 대리점들의 정보를 이제 한 본부에 있으면서 파악을 해서 저희가 7월 1일자 조직 개편과 아울러 8월 1일자로 그런 대리점들은 그 채널을 관장하는 조직들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대표인이 같지 않거나 사업장이 주소가 같지 않아서 아직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정책 자체를 진성법인의 증빙이 있는 것만 현재는 정책을 주기 때문에 그런 소매 판매점에서 나오는 숫자는 현재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지금은 기본적으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경우에 법인영업과 개인영업을 서로 혼재해서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까?

○ 최승호 (주)LG유플러스 PS본부 기업영업담당(상무보)

- 예, 맞습니다. 다만, 단지 대리점 사업자의 관점에서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의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이동통신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대리점이 영업행위하기를 원하지만 대리점 사업자는 사업 포트폴리오라는 관점에서 자기의 판매기회를 다 활용하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본사 차원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로 법에 대한 준수를 첫 번째로 하고 자원에 대한 효율 관점에서 맞게 대리점이 계속 또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계속 그러한 싸움이 영업분야 채널에서는 계속 줄다리기 내지는 쫓고 쫓기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대리점 차원에서 아직도 법인영업과 개인영업을 다 하고 싶어 하는 대리점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겸업코드를 주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습

니까?

○ 최승호 ㈜LG유플러스 PS본부 기업영업담당(상무보)

- 코드를 부여한다는 것은 대리점의 심사에서 회사가 코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나오는 부분은 개인영업 부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확히 될 것이고, 기존에 있는 코드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8월 1일자로 일단 드러난 것은 옮겼고, 나머지는 법인영업에서의 정책을 가지고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판매점은 떼어내고 대리점만 봤을 때 대리점 중에 법인영업을 하는 대리점과 개인영업을 하는 대리점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 최승호 ㈜LG유플러스 PS본부 기업영업담당(상무보)

- 이제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 이은재 ㈜LG유플러스 BS본부 사업부문장

- 구분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법인영업 하는 대리점이 개인영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 이은재 ㈜LG유플러스 BS본부 사업부문장

- 예, 아닙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닙니까? 이제 그것을 막습니까?

○ 최승호 ㈜LG유플러스 PS본부 기업영업담당(상무보)

- 현재는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대답하시는 것이 흐릿한 것 같아서요.

○ 최승호 ㈜LG유플러스 PS본부 기업영업담당(상무보)

- 아닙니다. 법인영업을 하는 대리점이 개인영업을 못 하게...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대리점이 자기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위해서 법인영업을 하는 사람이 개인영업도 하고 싶어 하고 개인영업을 하는 사람이 법인영업도 하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분리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최승호 ㈜LG유플러스 PS본부 기업영업담당(상무보)

-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막아서 법인영업 하는 대리점은 개인영업을 현재 못 하게 구조적으로 막았습니다.

○ 이은재 ㈜LG유플러스 BS본부 사업부문장

- 위원장님, 저희가 처음에 BS 조직에 있다가 PS로 넘기면서 대리점들이 반발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최승호 상무가 잠재우고 진행하면서 그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도 조사도 받고 심결 받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00%라고는 솔직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회사의 기본방침이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이은재 ㈜LG유플러스 BS본부 사업부문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것 없으십니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세 분이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없는 것은 유보하십시오. 굳이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듣는 저도 아주 답답합니다. 조직개편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전과 후가 본부 이름과 본부별로 기능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 이은재 ㈜LG유플러스 BS본부 사업부문장

- 저는 BS본부의 BS사업 부문을 맡고 있고, BS본부는 비즈니스 솔루션(Business Soultion)의 약자로 옛날 데이콤, 한국데이타통신부터 저도 그때 그쪽으로 입사했고 계속 기업만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LGU+로 통합이 되면서 모바일이라는 사업이 생겼고 그것이 기업에 가면서 우리가 어차피 하는 통신상품의 하나인데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기업모바일 조직이 저희 밑에 있었습니다. 저희 영업사원이 기업체에서 입찰이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또 일부 대리점을 통해서 특판을 하는 형태, 또 거점을 구축하고 기업체에서 파는 형태들의 영업을 해 왔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 갖다 준 <표>를 보면, BS본부에서는 앞으로 법인영업이든 개인영업이든 모바일에 관해서는 일체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이은재 ㈜LG유플러스 BS본부 사업부문장

- 저희는 입찰만 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지금 최승호 상무보께서는 PS본부에서 기업, 결국 법인영업, 모바일을 담당하는 분입니까?

○ 최승호 (주)LG유플러스 PS본부 기업영업담당(상무보)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 세 분은 이 자리에 처음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구(舊) 방통위 옛날 정통부 빼고라도 LGU+만 해도 이 자리에 몇 번째 나오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재발방지'라는 말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인지, 저는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사실조사한 결과, 어느 것이 위법이고 아니고, 법률위반 했다, 안 했다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우리는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인정한다, 저는 이것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심결장에서 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한다든지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어디셔널(additional)한 군더더기 이야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보면 계속 재발방지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한 번 물어봅시다. 우리 사무처에서 실태점검 하다가 사실조사로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LGU+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 달인지 두 달인지, 그 기간 중에 LGU+ 자체적으로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을 답해 보십시오.

○ 이은재 (주)LG유플러스 BS본부 사업부문장

- 사실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기간 중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려금을 축소하고 줄여 나가고 내부적으로는 과연 사기업이다 보니 이 사업을, 이 영업을 BS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PS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를 CEO 주재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7월 1일 날 결정을 해서, 만기라는 개념을 끊고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본부를 PS본부, BS본부로 하든 법인, 개인 겸업코드를 코로스오버(Crossover)를 하든, 무엇을 어떻게 하든 간에 LGU+ 회사 전체 입장에서는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 이은재 (주)LG유플러스 BS본부 사업부문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니까 저는 영업행태가 어떻고 회사의 조직이 어떠한지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뭐가 어찌됐든 간에 과다하게 지원금을 준다든지, 차별적인 지원금을 준다든지, 본사 차원에서 그

것을 유도·조장한다든지 그 부분이 결론적으로 중요한 팩트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지금까지 구(舊) 전기통신사업법이 됐든 지금 단말기유통법이 됐든 대리점이 어떻게 유통망이 어떻게 아까 본부별로 경쟁이 어떻게 그런 개연성이 늘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그러면 본사 차원에서 그런 일들이 유통망이든 본사의 어느 본부에서든 일어날 수도 있다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늘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감지해서 시정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냐는 것이지요. 더더군다나 방통위 사무처에서 점검을 상당 기간 동안 하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실무자들이 경고도 했을 것이고 그랬을 때 회사 차원에서는 방통위가 과연 사실조사를 할까 내지는 단독조사를 할까, 나중에 시정조치는 무엇을 내릴까, 이것을 계속 보면서 가려고 한 것인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아무 이야기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자꾸 재발방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 김규태 ㈜LG유플러스 CRO 공정경쟁담당(상무보)

-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방통위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사무국에서 경고를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엄중히 받아들였고, 저희가 개별 내부 본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사적인 차원에서 개선방안이 무엇일지를 고민한 것이었고, 그 고민 안에 조사가 개시하기 전부터 계획안에 조직개편도 원래 계획을 잡아 놔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하시는 부분들을 어떻게 간과하지는 않고 저희가 엄중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 조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답을 못하실 것을 묻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사업자별로 정부의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하에 거의 똑같은 형태로 조직이 되고 영업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은 사업자별로, 자기 회사별로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데, 단 법률을 위반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지요. 코드를 검업코드를 용인 하든지 말든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제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일즈맨인데 가다가 어느 개인을 만났으면 그분에게 세일즈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위반은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말씀은 저희 사무처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영업 관행이나 프로세스를 잘 분석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도 같이 내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위원회에 보고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 자체적으로 그것은 알아서 하시되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꼭 저희가 조사하고 안 하고 간에 그 회사 내에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구축되어야지 그것이 재발방지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는 것이지, 사건이 하나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계속 방지한다고 하고 ‘송구스럽다’, 저는 그렇게 해도 시장의 경쟁상황에서 다른 경쟁사업자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대응하고 이러다 보면 또 불법 위반할 여지도 있는데, 회사 내에서 그러한 시스템이나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우려가 되어서 어쨌든 영업이나 조직이나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시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위반은 안 되도록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은재 ㈜LG유플러스 BS본부 사업부문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잘해 주셨고 저도 대체로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관계에 대해서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이은재 사업부문장이십니까?

○ 이은재 ㈜LG유플러스 BS본부 사업부문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영업마케팅 전반에 대해서 관장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영업에 대해서 주로 하신 것 같습니다.

○ 이은재 ㈜LG유플러스 BS본부 사업부문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나 저는 LGU+의 이통시장에서의 마케팅 전반에 대해서 관련된 것을 질문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지요?

○ 이은재 ㈜LG유플러스 BS본부 사업부문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우리가 조사한 것, 증거를 잡은 것만 LGU+ 관련 58개, 56개 유통점에서 과다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유통점이 LGU+ 관련이라는 것은 LGU+로부터 사전승낙서를 받았을 것이고, 하나는 금지행위,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못 하도록 감독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LGU+의 영업을 활성화시키고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LGU+는 3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특성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다고 평가가 됩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그래도 위반행위, 금지행위는 하지 말고 영업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너무 안 하시는 것이고 그냥 과다지원금을 준다는가 과다지원금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한 다는가 이런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규모가 작아서 이통시장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별 것이 아닌데 왜 우리만 단독조사를 하느냐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 거부·방해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LGU+의 가입자 수가 지금도 1, 2, 3위의 이통사 시장점유율이 5:3:2이기 때문에 제일 규모가 작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위반행위의 양 말고도 상징적인 의미, 질적인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의 문제는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 여론에 어떻게 비춰졌는가 하는 것도 아마 기업 쪽에서 더 중요하게 참고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연관해서 3개 판매점이 사전승낙서를 미게시하고 이것을 받지 않고 영업을 했는데 이 3개 판매점은 LGU+와 어떤 관계입니까?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까?

○ 최승호 (주)LG유플러스 PS본부 기업영업담당(상무보)

- 판매점은 본사와 직접 거래하는 유통채널은 아니고 대리점과 거래하는....

○ 김재홍 부위원장

- 그 대리점은 LGU+와 관련 있는 대리점인데 그 대리점 산하인지 관계에 있는 판매점이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 최승호 (주)LG유플러스 PS본부 기업영업담당(상무보)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하나 더 장려금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지급되는 이통사 본사에서 지급되는 그 장려금을 과다 지급하면 거기에서 페이백이나 리베이트나 차별적 과다지원금이 파생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입니다. 사무처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관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재 부문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본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장려금을 너무 많이 주면 그것이 결국 위법행위인 개별 이용자들에게 차별적 지원금 또는 과다지원금으로 이렇게 파생된다, 우리는 그것이 상관성이 상당히 있다고 경험적으로 보고 그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아마 권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관련성이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 이은재 (주)LG유플러스 BS본부 사업부문장

-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은재 (주)LG유플러스 BS본부 사업부문장

- 다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이런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차별적 지원금 지급은 불법·위법행위이고 그것을 유도하는 행위도 위법입니다. 그것을 유도하는 행위도 못 하게 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상관성이 높느냐 하는 것은 또 달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 것 아닌데 왜 그러냐고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사 거부·방해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세 분 중에 어느 분도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사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일어났으며, 결과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LGU+는 정당하게 한 것인지를 여기에 와서 설명하고 해명하고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함으로써 사과에 준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재발방지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세 분 중에 누가 이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시인을 하든지 '우리는 근거가 있어서 했다'고 주장하시든지 하시겠습니까?

○ 김규태 (株)LG유플러스 CRO 공정경쟁담당(상무보)

-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었고,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할 의지도, 전혀 그럴 의도도 없습니다. 이런 결과를 빚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실무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한 것이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 말씀을 여기 이 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이 나와서, 그런 간부가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모 이통사는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해서 심결했을 때 심결장에 CEO급의 총괄 사장급 간부가 나와서 앞으로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이통시장의 안정화와 질서를 바로 잡는데 앞장서겠다, 5, 6개 항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통사와 어떤 기업을 제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재, 처벌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까?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처분, 제재가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장에 주는 메시지, 효과 그리고 이통사 그 행위주체에 주는 메시지,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저는 그래서 오늘 심결장에 종합적으로 책임 있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통시장의 안정화에 LGU+가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규모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조사 거부·방해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크게 됐고 국민 여론층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저는 LGU+ 기업에도 매우 불명예스러운 이미지 실추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큰 손해를 이미 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근거 있게 의결하지 않을 수 없는 안건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유사 위반금지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오늘 미흡해 보입니다. 여기 곤혹스러운 자리에 세 분 각 분야의 책임자가 나오셔서 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회사 차원에서 대처하고 국민 여론층에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법적 근거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LGU+의 정무적인 판단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부문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하시거나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은재 (株)LG유플러스 BS본부 사업부문장

- 마무리 발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마무리는 위원장께서 하실 것이고 우선 제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면 하시지요.

○ 이은재 (주)LG유플러스 BS본부 사업부문장

- 일단 저희 법인영업 대리점에서 월경을 통해서 법 위반을 해서 지금 시정조치 하는 자리에 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시 사업을 맡고 있던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정조치(안)에서 저희가 드린 바와 같이 당사는 사실조사 전·후 자진해서 시정노력을 하고, 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선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향후에도 저희는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고 유통망에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회사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 답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사무처에서 사전에 의견조회도 했을 테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반사항이나 위법성 판단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들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라든가 위반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신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내용들을 다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사과, 이런 이야기 말고 사실조사와 관련된 것...

○ 김규태 (주)LG유플러스 CRO 공정경쟁담당(상무보)

- 법 적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견서에 법률검토서를 드렸습니다. 제4조제5항 관련된 부분들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법체계상으로 저희 통신사의 문제로 보기는 힘들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9조제3항 관련되는 부분은 방통위에서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일 것이고, 저희는 피심인의 입장에서 침익적인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항변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저희가 의견을 작성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의도로 장려금을 그런 목적으로 주지는 않은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법지원금으로 전용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결과로 귀결되지 않도록 나름대로는 관리한다고 했습니다만 관리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률검토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 중에 보시면 판매점의 조사 거부권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어느 판매점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판매점 조사 거부는 LGU+의 책임으로 갈 부분은 아닙니다.

○ 김규태 (주)LG유플러스 CRO 공정경쟁담당(상무보)

- 예,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초에 이동통신 3사가 전부 장려금을 과다하게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고 해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과다한 장려금, 물론 용도는 법인영업에 쓰라고 지급한 장려금이지만 그것이 개인영업으로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감독해서 막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김규태 (주)LG유플러스 CRO 공정경쟁담당(상무보)

-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을 감안해 주심사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더 질문할 것이 없으시면 LGU+ 측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주)LG유플러스 의견진술인 퇴장)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 LGU+ 측에서 먼저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서라든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주장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이야기했는데 법 위반 중에 제9조제3항 지원금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되도록 유도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는 듯 말씀하시다가 또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다시 정정하셨습니다. 우선 시정조치를 보고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보고받은 위반행위 과다지원금 지급,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사전승낙제 위반, 조사 방해는 판매점들에 관한 것이지만 그 2개, 지원금 과다지급과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지는 않으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보니까 피심인 진술을 들어봐도 사무처에서 보고한 내용과 다른 것이 없는 것 같고,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반사항 정리를 조금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시정조치(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LGU+에 대한 시정조치(안)입니다. 첫 번째로 시정명령입니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반

행위의 즉시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인영업 조직의 위법행위를 개선·관리하기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법인영업의 이용자차별 및 일반소매형 판매 방지를 위한 이용약관 변경,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그리고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를 시정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과징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LGU+의 위법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부과기준율을 3.8%로 결정하고, 기준금액은 15억 2,000만원, 그다음에 필수적 가중은 해당되지 않고 조사 거부·방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20%의 추가적 가중을 적용해서 총 18억 2,0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신규모집금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4년도 아이폰6 관련 제재, 그리고 작년 9월 다단계판매 관련 제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3회째 반복된 점, 또 수차례 경고 및 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시정되지 않았던 점, 단독조사 기간 중에도 우회적 유통채널을 통해서 Spot성 고액장려금 지급 행위가 계속되었던 점 등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므로 LGU+의 법인영업에 대하여 10일간 신규모집금지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형사고발과 관련해서는 지난 ‘14년도 12월 동일 사유로 형사고발이 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관련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은 하지 않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유통점에 대한 시정조치(안)이 되겠습니다. 58개 유통점에 대해서 위법행위의 즉시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고자 합니다. 과태료는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56개 유통점 중에서 46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위반건수가 2건 이상으로 위법행위의 정도가 가중한 점을 고려하여 각각 150만원, 10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를 가중하여야 하나 자료제출에 협조하는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하여 각각 1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하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승낙제를 위반한 3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 조사를 거부·방해한 1개의 유통점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조치(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사무처에서 올린 시정조치(안)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신규모집금지, 유통망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등 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시정명령 중에 지금 <3>번과 <4>번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처리절차 개선과 이용약관 변경, 아까 제가 중간에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사업자 간에 자율적으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통일성을 기한다든지 이렇게 지나치게 해서 사업자 자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토론 과정에서 보니까. 그래서 저는 <3>번과 <4>번 정도의 내용이라면 그럴 우려는 없는데 혹시 실제 사무처에서 법인영업 조직의 위법행위를 개선 관리하기 위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약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디렉션(direction)을 준다면, 아니면 다른 사업자와 똑같이 해야만 하게 한다면 이런 것들은 저는 LGU+ 뿐만 아니고 어느 사업자든 그것은 사업자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실정법에 위반되느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인발브(involve)를 해서 혹

시라도 경쟁을 하다 보면 누구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도 낼 수 있고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영업패턴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것이 위법에 이르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아예 결과적으로 부정해 버리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정명령안에 대해서 무엇을 바꾸자는 소리는 아니고 그런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나중에 심의·의결서를 쓸 때 문구의 문제인데 <3>번과 <4>번에 대해서는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고 기본방향을 저희가 시정명령에 담는 것이고, 그 기본방향에 따라서 각 사업자가 적절하게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마 그렇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희가 시정명령을 비롯한 제재를 할 때는 기존 사례와 비교해서 형평성 문제, 그리고 위법행위의 시정과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실효성을 고루 감안해야 합니다. 제가 사전보고를 받았을 때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 우리 제재안에는 신규모집금지가 불법·위법을 주도했던 LGU+의 법인영업 부분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지속적으로 제가 확인한 것이지요. 이것이 과연 BS본부 차원에서만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PS본부와의 협의하에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것들이 최종적으로 CEO까지 보고되고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아까 조사관님에게까지 물어봤습니다만 그런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인영업 부분에 대해서만 신규모집금지를 한다, 이렇게 입장을 정한 것이 아닙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일단 저희들의 조사범위 자체가 이번에 어차피 법인영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한해 제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사무처에서 올린 안에서 그리고 제재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근거들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반박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 못 했기 때문에 일단 수용합니다만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위반행위를 통해서 확보한 가입자 비율은 낮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위반율이나 지급한 지원금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결코 위반의 정도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한해서는 올린 안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LGU+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조사와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제재를 과징금도, 신규모집금지도 법인 폰 영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LGU+ 관련 56개 유통점에 과다지원금 지급행위, 이것도 법인 폰 영업에서 나온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대리점에 과다 장려금을 지급하고 그것이 차별적 지원금이나 다른 불법적인 리베이트 같은 것으로 흘러들어가게 했다는 유도행위 현상도 보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법인 폰으로 나간 것이 개인으로 넘어간 부분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전체적으로 사무처가 조사한 대상이 법인 폰 영업의 소매유통점만 조사했으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조사 거부·방해도 법인 폰 영업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러 갔는데 거부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지난 6월 2일 날 있었던 행위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법인 폰 영업이 평균 하루당 가입자가 얼마나 됩니까?

○ 문현석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지난번에 6,600명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 문현석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하루 1,000명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래서 이것이 겉으로 알려진 것보다 위반행위라고 할까, 금지행위의 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보다 가입자 규모도 작은 기업이고, 그러나 과징금이나 신규영업 금지가 법인 폰으로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또 너무 약한 제재 아니냐, 또 솜방망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데 분야별로만 과징금 또는 신규모집금지를 해야 하는 것이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사대상이나 범위, 기간 등을 처음에 검토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소위 말하는 대란이 크게 발생할 때는 이통 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했고...

○ 김재홍 부위원장

- 일반 가입자, 일반영업을 전부다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14년까지는 그렇게 해 왔고, '15년 초에 있었던 단독조사권에 있어서도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례들은 조사범위 자체가 상당히 제한된 형태로 이루어져서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를 해 왔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비록 범위는 작지만 중대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았고 또 부과기준율도 거의 최고 수준에 3.8%를 검토하였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과거에 주한미군 폰영업, 외국인 폰영업 위반이 발견되면 그 영업행위에서 얻은 영업이익을 대상으로만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다단계라든가 주한미군, 또 20% 요금할인과 같이 분야별로 조사한 사례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제재도, 거기에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과징금 부과를 해 왔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어떤 금지행위가 전체 일반영업 회사 차원 전체에 관련된 것이냐? 예를 들면 조사 거부·방해는 본사 차원에서 거부·방해한 것 아닙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 가중을 20% 한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은 20% 가중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20% 가중하였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데 분야별로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법이나 시행령에 근거가 아니고 그동안 관행에 의한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법령에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근거에 따라 결국 어떤 특정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조사한 건에 국한해서만 과징금이나 신규모집금지를 정한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초기부터 저희들이 조사대상이나 기간, 범위를 정하고 시작합니다.

○ 문현석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부위원장님, 기준금액을 정할 때 시행령상 관련 매출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을 두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관련 매출액이라는 것은 금지행위를 한 영업기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분야별호가 아니라 아이템별호가 아니라....

○ 문현석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그렇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조사범위와 기간, 이런 것이 결국은 다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인이 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하여튼 법령에 있는 근거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해 온 관행이나 전례 같은 것을 근거 있게 제시하고 설명을 잘해야 납득이 될 것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면 2015년 초에 SKT가 단독조사 대상이 되었던 것은 다른 이동통신사에 비해 시장 전반에 있어서 과다한 지원금 지급을 제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독조사의 대상으로 삼아서 영업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LGU+에 대해서 지금 단독조사를 한 것은 LGU+가 단말기 유통시장 전반에 대해서 지원금을 과다지급 했다는 증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법인영업으로 사용되어야 할 단말기들이 개인영업으로 넘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현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이동통신사에 비해서 그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단독조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처럼 실태점검을 해서 위반행위가 나타났을 경우에 위반행위가 나타난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면 작년 초에 있었던 SKT나 지금 LGU+나 다 같이 전체 사업자를 조사하고 위반 정도가 높은 데는 높은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낮은 데는 낮은 부과기준을 적용했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실효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어서 이제는 설사 다른 2개 이동통신사업자들도 그런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반 정도가 낮을 때에는 거기를 그냥 놔두고 제일 높은 데만 단독으로 조사해서 제재를 하자는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 제도에 따라서 나온 것이고, LGU+의 경우에는 단말기 유통 영업 전반에 있어서 위반이 높은 것이 아니고 법인영업에 한해서 위반이 높았기 때문에 단독조사를 받은 것이어서 저희가 대상도 법인영업으로 했고 기간도 법인영업이라는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다른 경우보다는 오히려 기간을 더 넓게, 길게 잡아서 조사했던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시정조치(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주셨습시다만 다 같은 의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9월 21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6년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22분 폐회 】